

##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-1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2-2조제2항제4호가목 중 “유동화증권”을 “유동화증권(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목 (1)과 (2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 (4)를 삭제한다.

- (1)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(영 제10조제2항제11호,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
- (2) 주권상장법인, 영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 및 같은 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자

제2-2조제2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나.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. 다만, 제1-2조제6항에 따른 원화표시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-2조제2항제5호 중 “유동화증권(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)”를 “유동화증권”으로 한다.

제2-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영 제124조의2제6호”를 “영 제124조의2제1항제6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124조의2제2항제1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(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

③ 영 제124조의2제2항제3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투자자가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의 시세, 발행인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가 정한다.

④ 영 제124조의2제2항제4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”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에 대한 기본정보, 투자위험, 그 밖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공·설명하고, 투자자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.

제2-18조제1항 중 “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”를 “협회”로 한다.

제5-5조제1항제1호 중 “그 가격은 다음 가목에서 정하는 가격과 나

목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.”을 “그 가격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.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.

제5-9조제5항제1호 중 “그 가격은 매도주문 직전의 가격과 매도주문 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중 낮은 가격과 그 가격으로부터 10 호가가격 단위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.”을 “그 가격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.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2-2조제2항의 개정규정 : 2016년 8월 1일
2. 제2-4조의2의 개정규정 : 2016년 6월 30일
3. 제5-5조제1항 및 제5-9조제5항의 개정규정 : 2016년 9월 12일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-1조(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)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공적자금상환기금법」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</li> <li>2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기금</li> <li>3.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군인연금기금</li> <li>4. 「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</li> <li>5.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른 예금보험기금</li> <li>6.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</li> <li>7.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기금</li> <li>8.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 제56조의2에서 정하는 자(이 경우</li> </ol>	<p>&lt;삭 제&gt;</p>



화전문화사에 양도하는  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
하다.

(1) 영 제11조제1항제1호가  
목 및 나목(영 제10조제2  
항제11호, 같은 조 같은  
항 제14호부터 제17호 및  
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 
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
는 제외한다)에 따른 전  
문가

(2) 영 제10조제3항제16호  
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

(3) (생략)

(4) 영 제6조제1항제5호부  
터 제7호까지의 법률에  
따라 설립·설정된 집합  
투자기구

(5) (생략)

나. 채권상장법인, 영 제10  
조제2항의 금융기관, 「공

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  
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.  
이하 같다)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(1)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  
터 제4호까지의 자(영 제  
10조제2항제11호, 같은  
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  
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  
외한다)

(2) 주권상장법인, 영 제10  
조제3항제12호·제13호  
및 같은 항 제16호에 해  
당하는 자

(3)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(5) (현행과 같음)

나.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  
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

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5,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

5. 유동화증권(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가. ~ 나. (생략)

6. ~ 8. (생략)

③ (생략)

제2-4조의2(매출신고서 면제요건) 영 제124조의2제6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. 다만, 제1-2조제6항에 따른 원화표시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유동화증권-----  
-----

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-4조의2(매출신고서 면제요건) ① 영 제124조의2제1항제6호-----  
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영 제124조의2제2항제1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(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

<신 설>

다)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.

③ 영 제124조의2제2항제3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투자자가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의 시세, 발행인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가 정한다.

<신 설>

④ 영 제124조의2제2항제4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”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에 대한 기본정보, 투자위험, 그 밖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공·설명하고, 투자자의 확인을 받는

제2-18조(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시의 특례) ① 영 제1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”이란 발행인이 매출을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공 시하는 것을 말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~ ④ (생략)

제5-5조(자기주식의 취득을 위 한 매수주문의 방법)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 법인이 「상법」 제341조제1 항제1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 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주문 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- 1.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개시 전에 매수주문을 하 는 경우 그 가격은 전일의 종가와 전일의 종가를 기준 으로 100분의 5 높은 가격의

것을 말한다.

제2-18조(호가중개시스템을 통 한 소액매출시의 특례) ① 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협회 -----  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-5조(자기주식의 취득을 위 한 매수주문의 방법) ① 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범위 이내로 하며,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 중에 매수주문(정정매수주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다음 가목에서 정하는 가격과 나목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.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 중 매수주문은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이 종료하기 30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 매수호가와 매수주문 직전까지 체결된 당일의 최고가 중 높은 가격

나.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 매수호가와 매수주문 직전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 호가가격단 위 낮은 가격

2. ~ 4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제5-9조(자기주식 처분기간 등)

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취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그 가격은  
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5-9조(자기주식 처분기간 등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매도주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1.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개시전에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전일의 종가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며,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도주문(정정매도주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매도주문 직전의 가격과 매도주문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중 낮은 가격과 그 가격으로부터 10 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.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 중 매도주문은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이 종료하기 30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2. ~ 4.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그 가격은  
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⑥ ~ ⑧ (생략)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